

#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추가모집 계획

-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, 경영·마케팅,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(체험 등)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

## I. 추진방향

-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(농업법인) 또는 성공 농업(귀농)인으로부터 영농 기술습득, 정착과정 상담·경영기법, 창업과정 등 연수
- 영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
-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, 농산업분야 창업(일자리창출) 시,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

## II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2년 4월 ~ 11월(기간 중 5개월)
- 사업량: 1개팀 2명(선도농가 1, 연수생 1)
- 사업비: 연수생 800천원/월, 선도농가 400천원/월 (20일, 160시간 기준)
- 사업내용
  -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 중심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지원 등

## III.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

- 사업신청
  - 신청기간: 2022. 3. 16.(수) ~ 3. 22.(화) 18:00까지
  - 모집인원: 선도농가 1명, 연수생 1명
  - 신청방법: **방문**접수
  - 방문신청장소: 서귀포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사회지도과 농촌자원팀

□ 자격요건

**【연수생】**

- 농식품부 2022년도 「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」 신청자
- 서귀포(남원읍~서귀포시 동지역)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(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)
  -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·귀촌인을 선정
-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
-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(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)
  - ※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(이중 수혜만 받지 않으면 가능)

**【선도농가】**

-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,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, ICT(정보통신기술) 활용 농가·우수 농업법인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(WPL), 농업명인, 농업 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
  -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,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(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)
  -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(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 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)
    - ※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,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(확인)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

□ 제출서류

**【연수생】**

-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(붙임 3 서식)
  - ※ e-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(붙임 4) 입력

- ② 보안서약서(붙임 9 서식)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(붙임 10 서식)
- ③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(최근 5년 이내 해당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내역 및 이주 동반 가족 수를 포함)
- ④ 영농사실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
- ⑤ 귀농교육 및 영농교육 이수 확인증(교육 수료증 등)

### 【선도농가】

-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(붙임 5 서식)
-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(붙임 6 서식)
  - ※ 운영계획서: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, 실습사항,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, 목표의 기대 효과를 포함하여 작성
  - ※ e-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(붙임 7) 입력
- ③ 보안서약서(붙임 9 서식)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(붙임 10 서식)
- ④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- ⑤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등

## IV. 운영방법

- (필수)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
  - ※ 단순노동(작업)보다는 학습지원, 기술이전,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
- (선택) 오리엔테이션, 간담회, 평가회, 자율학습조직, 자가영농실습 등
- 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: 3~7개월, 월 160시간
  - 자가영농 실습인정(월 80시간 이내): 사업담당 및 선도농가 협의
  - \* 자가영농지 실습은 매달 현장실습 총 연수시간의 50%만 인정함  
[ex. 4월 한달 동안 10일(80시간) 연수 시 자가영농실습 40시간 인정]
- 주작목+부작목 연수가능, 선도농가 및 연수생 복수지원 가능
- 잔여 실습기간을 우수 실습농가 및 차순위 실습농가에 배정 가능
-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이 현장실습 가능(3명 이상 연수는 불가)
- 1명의 연수생이 2명의 선도농가에서 순차적 실습가능(연수기간 중복불가)
- 현장실습보고서를 월 1회 이상 e-HRD 시스템에 등록

## □ 사업대상자 선정

### 【연수생】

-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 선정
  - ※ 연수대상자 선정 시 심의회에서 선정 가능
- 연수대상자 선정 시 농식품부 2022년도 「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」 신청자를 우대 할 수 있으며, 예비 귀농인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이수(35시간 이상)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 선정 가능
- 연수대상자 선정은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와의 약정체결(붙임 12 서식)을 통해 최종 선정
-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(농업인)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
  - ※ 가입비용은 연수생 부담

### 【선도농가】

-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의해 연수시행자를 최종 선정
- 농업기술센터와 선정된 선도농가, 연수생간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
-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
- 약정체결은 3~7개월을 원칙으로 하되, 연수생 및 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 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약정 가능
- 연수생과 선도농가는 현장실습교육 동안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음

□ 연수생 및 선도농가 관리

- 연수생 선정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완료 후 선도농가가 제출한 연수운영계획서, 현장실습교육장 관련 각종 정보자료와 연수생이 제출한 연수신청서를 서로 교환·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으로 약정체결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※ 『연수약정체결 및 사전설명회』 개최(필수)

-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 이행여부를 지도·감독하고, 그 결과에 대하여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(결과) 점검 보고서(붙임 13 서식)을 작성하고, 이를 관리·비치하여야 함
- 약정의 무효·해지·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

— < 약정의 무효·해지·변경 등 > —

- ★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
- ★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·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

- 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,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, 연수생과 선도농가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
- 연수생 및 선도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선도농가·연수생 pool 구축 및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대한 교육 등 추진  
※ 선도농가 및 연수생 pool 구축사이트: <http://hrd.rda.go.kr>
- 현장실습교육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연수생에게 스마트 기기(휴대폰)를 활용한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을 사용하게 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※ <http://hrd.rda.go.kr>  
※ 『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』 위주의 출석체크를 원칙으로 하며,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과 「출근부」를 병행하여 사용 가능

□ 교육훈련비 및 교수수당 지급

**【교육훈련비】**

- (지급대상) 연수생
- (지원금액) 월 80만원 한도(3~7개월간)
- (지원조건) 매월 10일(1일 8시간)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,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
  - ※ 10일 미만 연수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10일 이상 연수시에도 연수기간에 비례하여 지급
  - ※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(8시간 기준) : 4만원(교통비, 식비 포함)
- (1일 교육시간 한도) 8시간
- (신청방법) 연수생은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출근부(사본),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훈련비 청구서(붙임 14 서식)를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
  - ※ 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
- (지급시기 및 방법)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생의 월별 현장실습 보고서 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훈련비를 연수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
  - ※ 출석확인용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 또는 출근부(서류)를 통해 확인

**【교수수당】**

- (지급대상) 선도농가
- (지원금액)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(3~7개월) 지급
  - ※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
- (지원조건)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 제공하여야 함
  - ※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
- (신청방법)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 추진실적 (결과)보고서(붙임 18 서식),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수수당 청구서(붙임 17 서식)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제출
  - ※ 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
  - ※ 연수 추진실적(결과)보고서는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

- (지급시기 및 방법)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수수당을 선도농가 은행계좌에 입금
- 제재조치
  -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(연수생 및 선도농가) 선발 또는 실습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실습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현장실습교육 사업대상에서 제외
- 연수생 사후관리
  - 현장실습교육 종료 후 2년간 수료생에 대하여 관리대장(붙임 20 서식)을 작성·비치하고 사후관리 실시
    - ※ 사후관리내용: 귀농여부, 영농종사 현황 등

## V. 기대효과

-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으로 영농기술습득 및 기술센터, 전문 농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농촌지역 조기적응
- 성공적인 농업·농촌 정착으로 활력 있는 농촌건설에 기여

## < 목 차 >

- (붙임 1) 선도농가 선정기준(안)
- (붙임 2) 연수생 선정기준(안)
- (붙임 3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
- (붙임 4)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(시스템 입력)
- (붙임 5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
- (붙임 6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
- (붙임 7)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(시스템 입력)
- (붙임 8) 현장실습보고서(시스템 입력)
- (붙임 9) 보안서약서
- (붙임 10)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- (붙임 11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현황
- (붙임 12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(표준)약정서
- (붙임 12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(결과) 점검보고서
- (붙임 13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(결과) 점검보고서
- (붙임 14) 연수생 교육훈련비 청구서
- (붙임 15) 연수생 출근부
- (붙임 16) 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
- (붙임 17)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
- (붙임 18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(결과) 보고서
- (붙임 19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증명서
- (붙임 20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



## 선도농가 선정기준(안)

평가항목	배점	득점	비고
<p>○ 연수시행 기반 및 수행능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(5)</li> <li>* 고용부 농산업인턴제, 농식품부 WPL 등</li> <li>-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및 교육이수실적(10)</li> <li>- 영농규모 및 관련분야 기술보유 현황(10)</li> <li>* ICT(정보통신기술) 활용 시설 등(5)</li> <li>* 6,000㎡ 이상 (5), 6,000㎡ 미만 (3)</li> <li>- 실습포장, 교육장 위치 및 효율성, 교재 등 구비여부(5)</li> </ul>	30		
<p>○ 연수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수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(15)</li> <li>- 월별 실습내용의 실천 가능성(15)</li> <li>- 연수후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(10)</li> </ul>	40		
<p>○ 기타여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업기업, 유관기관 등 연수관련 협력수준(10)</li> <li>- 작목반, 타 농가와의 협력 및 참여도(5)</li> <li>-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(5)</li> <li>- 현장실습 코칭 및 지도계획(시스템 활용 등)(5)</li> <li>- 여성농업인 여부(5)</li> </ul>	30		
합 계	100		
<b>총 합 의 견</b>			

## 연수생 선정기준(안)

구분	평가항목	평가 및 배점기준	점수
계	100점		
신청자 자격 (40점)	○ 신청자 연령(10) ○ 본인 포함 가족수(10) ○ 귀농후 농촌거주기간(10) ○ 2022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(5) ○ 여성 또는 부부참여(5)	○ 만 30세 이하(10), 31~40세(7), 41~50세(5), 51~60세(3), 61세 이상(1) ○ 4명 이상(10), 3명(7), 2명(5), 1명(3) ○ 3년이상(10), 1~2년(7), 1년 미만(5) ○ 신청자(5), 미신청자(0) ○ 여성 또는 부부참여(5), 그 외(0)	( ) ( ) ( ) ( )
		※ 증빙서류 : 주민등록 관련자료(주소이력 포함)	
귀농교육 (15점)	○ 귀농교육 이수시간(15)	○ 100시간 이상(15), 71~99시간(10), 51~70시간(5), 21~50시간(3), 20시간 이하(1) * 사이버교육은 수료시간의 50% 인정	( )
		※ 증빙서류 : 교육수료증 등	
사업규모 (10점)	○ 농지보유 및 임차규모(5) ○ 농업시설 및 임차규모(5)	○ 농지 6,000㎡, 대가축 2두 이상(5) 농지 6,000㎡, 대가축 2두 미만(3) ○ 하우스 등 농업시설 1,500㎡ 이상(5) 하우스 등 농업시설 1,500㎡ 미만(3) * 임차농지 및 시설 포함	( ) ( )
		※ 증빙서류 : 농지원부 등 관련증빙자료	
사업계획 (20점)	○ 사업계획 수립(10) ○ 시스템 활용의지 및 사업화 방안(10)	○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○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	( ) ( )
		※ 증빙서류 : 사업계획서(시스템활용계획 등)	
기타여건 (15점)	○ 신청자 영농 및 사업의지(10) ○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 기여도(5)	○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○ 우수(5), 보통(3), 미흡(1)	( ) ( )
		※ 증빙서류 : 자율양식	

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

신청자	(성명)	(주민등록번호)-		
①연 령(만)		②(이주 전) 거주지	예) 경기 수원	
③기 이수 귀농 교육 과정명	예) 농촌진흥청 제대예정군인 귀농교육('14)			
현 주소지				
연 락 처		이메일 주소		
④연수희망작목	(주작목)	(부작목)		
⑤연수희망지역	(최우선 지역)	(우선 지역)	(차선 지역)	
⑥연수희망기간				
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				
⑧만40세 미만의 경우	농식품부 2022년도 「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」 신청사실 여부.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			
⑨기타 특이사항				
⑩추천기관 확인란	(소속)	(직위)	성명	(인)

본인은 2022년도 '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' 연수를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 청 일 : 2022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별첨 : 작성 시 유의사항(뒷면)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
작성요령

---

- ① 연 령(만) :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
- ② 이주 이전 거주지 :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
- ③ 공인 귀농교육과정 : 우선 순위 선정시, 활용하고 해당 시군은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여부 확인
- ④ 연수희망작목 :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- ⑤ 연수희망지역 :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 (희망 선도농가(농업법인) 기재 가능)
- ⑥ 연수희망기간 :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,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(예시 : 3월~12월)
-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: 선도농가와와의 약정체결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(별지 사용가능)
- ⑧ 만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2022년도 「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」 신청사실 여부에 반드시 체크
- ⑨ 기타 특이사항 :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
- ⑩ 추천기관 : 해당 지역 시·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수신청서 사전 확인·보완 후 추천 가능

\*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

[붙임 4]

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 
추진계획서(시스템입력)

---

연수개요

센터	연수생		선도농가 성명(예상)	현장실습기간 (희망기간)	희망 연수작목
	성명	귀농연월			
		2020. 3		4.1~9.30	

현장실습교육 동기(목적)

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(3가지 이상)

**【농업기술, 사업화기술, 사업마인드, 관계강화 등】**

- 
- 
- 
-

선도농가에게 바라는 점

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

---

① 신청자	(성명)			
	(사업자등록번호)	(주민등록번호)	-	
주사업장 주소				
연 락 처		이메일 주소		
② 연수가능작목	(주작목)	(부작목)		
③ 연수가능지역				
④ 연수가능기간				
⑤ 자기소개	1. 주작목의 영농규모 2. 전체 영농규모 3. 영농경력(년)			
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				
⑦ 기타 특이사항				
⑧ 추천기관(단체) 확인란	(소속)	(직위)	성명	(인)    적합여부

본인은 2022년도 ‘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’ 지침에 의거 ‘현장실습교육장’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 청 일 : 2022년    월    일

신 청 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별첨 :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

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

---

- ① 신청자 :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,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
- ② 연수가능작목 :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- ③ 연수가능지역 :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
- ④ 연수가능기간 :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,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(예시 : 2~12월)
- ⑤ 자기소개 :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, 구체적으로 작성하되, 영농규모, 영농경력,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(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)
-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: 현장실습교육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재하되,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
- ⑦ 기타 특이사항 : 연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
- ⑧ 확인란 :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, 영농기술 수준,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

\*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 
운영계획서

---

① 신청자	(성명) (사업자등록번호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생년월일)		
② 연수가능작목	(주작목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부작목)		
③ 연수가능기간			
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			
⑤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			
⑥ 월별 실습사항			
⑦ 실습 기대효과			
⑧ 추천기관 확인란	(소속)	(직위)	성명 (인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적합여부

본인은 2022년도 ‘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’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.

신청일 : 2022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

<뒷면>

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작성요령

---

- ① 신청자 :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,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 
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
- ② 연수가능작목 :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 
기입
- ③ 연수가능기간 :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 
표기하되,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(예시 : 3월~12월)
-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: 연수생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 
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
- ⑤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: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 
구체적으로 작성
- ⑥ 월별 실습사항 :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 
현장실습사항을 기재
- ⑦ 실습 기대효과 : 연수희망기간 내에 현장실습 수행시 기대되는  
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
- ⑧ 확인란 :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선도농가  
후보자의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, 필요시 선도농가  
후보자와 협의·보완 등 조치 필요

\*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

[붙임 7]

##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 (시스템 입력)

구 분	주 요 내 용							기타 사항
개 요	센터명	선도농가		연수생 성명 (예상)	연수희망기간		연수 지원 작목	
		성명	영농연월		시작일	종료일		
핵심 생산기술								
경영·유통 및 창업								
농촌적응 노하우								
견학·지인 소개								
기대효과								

[붙임 8]

## 현장실습 보고서 (시스템 입력)

---

### ○ 사업개요

구분	이름	작목	계약기간	월 근무일수	규모(m <sup>3</sup> )
연수생					
선도농업인					

### ○ 경영계획, 실천, 점검(To Do List)

\* 연수생 작성

번호	경영계획	경영실천(창업접목)
1		
2		
3		
4		
5		

### ○ 향후 계획 및 시사점

선도농업인	연수생

### ○ 농업경영 코칭

\* 센터 담당자 작성

	담당자 확인 (서명)
2022년    월    일	

[붙임 9]

## 보안서약서

본인은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현장실습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, 협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.
2.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담당공무원의 운영지침 상 지시에 따르겠습니다.
3. 농촌진흥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,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4. 현장실습교육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

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현장실습교육에 임할 것이며, 본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서약자: (인)

○○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[붙임 10]

##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
- 성      명 :
- 주민등록번호 :
- 주      소 :

상기 본인은 농촌진흥청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.

2022년   월   일

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○○ 농업기술센터소장   귀하



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(표준)약정서

---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, ( )소장을 “갑”이라 하고, 선도농가 ( )를 “을”이라 하며, 연수생 ( )을 “병”이라 하며, “갑”. “을”. “병”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1. 약정기간 : 2022년 월 일부터 2022년 월 일까지( 개월)

### 2. 약정내용

**제1조(총칙)** “을”은 “병”에 대하여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, “병”은 “을”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을 이수한다.

**제2조(약정의 해약)** ①“갑”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.

1. “을”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.
2.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.
3.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약정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과 “병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“갑”은 “을”과 “병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**제3조(연수생과 선도농가)** ①“병”은 당초 “을”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 등이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“갑”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“을”은 “병”이 당초 “을”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“갑”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“을”과 “병”간에 연수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“갑”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“을”과 “병”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

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(결과) 점검  
보고서

---

①선도농가	(성명) (사업자등록번호) (생년월일)
②연수생	(성명) (생년월일)
③연수작목	(주작목) (부작목)
총 연수기간	
④보고연수기간	
⑤ 교육의 주요 내용	
⑥기타 특이사항	
⑦종합검토의견	

2022년도 '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'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추진상황  
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점검자 : 소속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○○○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<뒷면>

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(결과) 점검 보고서 작성요령

---

- ① 선도농가 :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,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
- ② 연수생 : 연수생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
- ③ 연수작목 :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- ④ 보고연수기간 :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(결과 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)
- ⑤ 교육의 주요 내용 :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
- ⑥ 기타 특이사항 :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 
\* 추진상황 점검시 귀농연수생이 없을시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(외출계, 출근부 등)
- ⑦ 종합검토의견 :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(할) 사항을 기입

## ( )월 연수생 교육훈련비 청구서

<b>신청인</b>	성 명		주민 등록번호	-		
	주 소					
	은행계좌	계좌번호 : ( 은행 지점) (예금주 : )				
	총 연수기간	~ ( 개월)			근무일수	(일)
					근무시간	(시간)
	청구금액	금 원				
연수작목	(주작목)		(부작목)			

<b>교육훈련 내용</b>	
--------------------	--

위와 같이 연수생 현장실습 근무에 따른 교육훈련비 지급을 신청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연수생

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**【구비서류】** 1. 연수약정서 사본(기 제출시 생략)

2. 출근부 사본

3. 통장 사본

\* 연수생은 매월 시스템으로 보고 필수



##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(연수생 작성)

(※ 해당 작업내용에  표시후 학습내역 작성)

일 자	학습구분	확 인	
월 일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약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초 <input type="checkbox"/> 파종 <input type="checkbox"/> 작물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수확·선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           )		
	학습시간		학습내용
	※ 필요시 사진 첨부		
월 일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약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초 <input type="checkbox"/> 파종 <input type="checkbox"/> 작물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수확·선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           )		
	학습시간		학습내용
	※ 필요시 사진 첨부		

\* 센터 여건에 맞게 경영일지 등으로 대체 가능

# ( )월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

사업장명	대표자
------	-----

사업자 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
----------------------	--

소재지	연락처 ( ) -
-----	-----------

지급희망 은행계좌	계좌번호 : ( 은행 지점) (예금주 : 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교수수당 신청 대상 기간	. . . ~	교수수당 신청금액		(₩	원 )
연수생 성명	주민등록번호	전체연수기간	근무일수	근무시간	청구금액
					원
					원
					원
					원

위와 같이 연수생에 대한 현장실습교육 연수시행에 따른 교수수당 지급을  
신청합니다.

2022년 월 일  
선도농가 (서명 또는 인)  
○○○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- 【구비서류】**
1. 연수약정서 1부 사본(기 제출시 생략)
  2. 연수 추진실적(결과)보고서(연수생별 작성)  
\* 시스템 보고서로 대체 가능
  3. 통장 사본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(결과) 보고서

① 선도농가	(성명) (사업자등록번호) (생년월일)
② 연수생	(성명) (생년월일)
③ 연수작목	(주작목) (부작목)
전체연수기간	
④ 보고연수기간	
⑤ 교육의 주요 내용	
⑥기타 특이사항	

2022년도 ‘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’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\* 선도농가는 매월 추진실적 보고, 사업종료 시에는 결과 보고서로 제출  
(단, 시스템 보고자는 생략 가능)

2022년 월 일

보고자(선도농가) : (인)

○○○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<뒷면>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실적(결과) 보고서  
작성요령

---

- ① 선도농가 :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,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
- ② 연수생 : 연수생이 2인일 경우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
- ③ 연수작목 :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- ④ 보고연수기간 :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  
(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)
- ⑤ 교육의 주요 내용 :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
- ⑥ 기타 특이사항 :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



제 호

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증명서

성 명 :

주 소 :

생년월일 : -

연수기간 : ~ (총 시간)

연수작목 :

위 사람은 농촌진흥청이 시행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 
교육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

2022년 월 일

○○농업기술센터 소장

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

No	성명	성별	생년월일	휴대폰	주소	연수작목	연수기간(개월)	영농현황 (실습종료시)			영농현황 (실습종료1년 후)			영농현황 (실습종료2년 후)				
								영농중	영농진입준비	추후결정	영농중	영농진입준비	추후결정	영농중	영농진입준비	추후결정		
1	홍길동	남	2000.1.1.	000-0000-0000	서포시	사과	2020.5.1.~9.30. (5개월)			○			○					
2																		
3																		
4																		
5																		
6																		
7																		
8																		
9																		
10																		
11																		
12																		

\*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후 2년간 사후관리 실시